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의 연차별 지원항목을 조정하며,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안 제2조)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나. 도시·군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의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안 제4조제3항)  
 주민지원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로 추진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2차 연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신청하도록 조정하고, 사업 추진단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다.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산출의 객관성 확보(안 제6조제3항)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근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정부세종청사 6동 4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743(3744) 팩스 : 044-201-5574